

2. “並行輸入” 許容의 經濟的 效果

- (焦點) 財經院은 11월 6일 부터 並行輸入을 허용함
 - (許容範圍) 국외 商標權者와 국내 상표권자(또는 국내 專用使用權者)가 동일인이거나 系列會社, 輸入代理店 관계에 있는 경우
 - (禁止持續) 위의 관계가 아닌 국내 상표권자(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)가 수입은 하지 않고 제조, 판매만 하는 경우 병행수입 금지 지속
- (爭點) 反對論은 상표권 보호가 출처표시, 품질보증 기능뿐 아니라, 購買前 및 구매후의 광범위한 서비스 투자에 필요한 前提條件임을 내세우고 반면에 贊成論은 병행수입 금지가 독점점의 국제적擴散 및 強化를 초래하고 수입 가격 하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봄
- (評價) 수입상품과 관련상품의 가격안정 및 多樣化, 유통업계의 경쟁력 提高를 기대. 병행수입 허용은 전반적으로 世界化 및 市場開放 추세에 부합하여 상표권 보호와 경쟁 촉진의 두 가지 원칙을 잘 調和시킨 정책임

並行輸入 이란
국내 獨占輸入
業者에 의해 외
국상품이 수입
되는 경우 제3
자가 국내 독점
수입업자의 허
락없이 수입하
는 것

병행수입 금지
는 독점점의 国
제적 擴散 및 强
化를 초래

○ “並行輸入”的 정의

- 병행수입(parallel import) 이란 국내 獨占輸入業者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국내 독점수입업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함
- 真正상품이지만 국내 상표권자의 동의도 없이 수입되어 white market 상품도 아니므로 미국에서는 (불법한 black marketing 과 비교하여) gray marketing 혹 gray market import 라고 부름

○ 병행수입 허용의 贊成論

- 병행수입을 금지할 경우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금지하여 외국 브랜드가 국제적 價格差別化로 국제적 독점력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게됨
- 병행수입 금지는 국내 유통 회사의 대외 경쟁력 약화를 조장함

- 소수 고급 브랜드 상표권의 과도한 보호는 사치성을 换起・助長하여 사회적 厚生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
- 환율변동, 초과생산 등으로 수입단가가 떨어져도 독점수입업체는 국내판매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에서 저렴하게 수입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됨

상표권 보호는 출처표시, 품질 보증 기능뿐 아니라, 購買前後의 광범위한 서비스 투자에 필 요한 前提條件

○ 병행수입 허용의 反對論

- 병행수입자는 기존 상표권자가 형성한 영업권(good will)에 무임승차(free ride)하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가능하므로 상표권 보호는 정보로서의 광고, 고객 기호에個別化된 전문적 상담, 품질 및 A/S등 광범위한 서비스 투자를 가져오는 전제조건임
- 병행수입은 서비스에 의한 商品差別化, 多樣化를 소멸시키기 쉬움
- 병행수입으로 다수의 외국 브랜드 상품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고유의 경쟁브랜드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음
- 수입 브랜드 다양화로 소비자가 진정상품을 판별하는데 전문 지식을 필요하게 됨
- 외국상표권자는 供給線 제한, 국내 수입대리점과 자본유대 강화를 통해 병행수입에 맞설 수 있음

○ 許容의 背景 및 經過

- 미국등 선진국들은 지난 수십년간 국내외 상표권자가 同一人 또는 系列社 관계인 경우 병행수입을 널리 허용 해 왔음
-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독점수입업체가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경우 제3자의 병행수입은 국내 상표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되어 최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음
- 그런데 최근 소비자 보호원의 조사에 의하면, 주요 수입 소비재의 판매가격은 수입원가의 2.7 배로 높게 형성되

어 있음

재경원은 과도한 수입 소비재 가격과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책으로 미국등 先進國의 병행수입 허용 추세에 맞추어 1995년 11월 6일 부로 병행수입을 허용

- 또한 流通市場 開放을 앞두고 국내 유통회사들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여 재경원은 4개월여 의견 조율 끝에 병행수입 허용제도의 틀을 완성하고 9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함
 - 95년 7월 20일 재경원은 관계부처회의를 통하여 브랜드내의 그리고 브랜드간의 경쟁을 誘發하기 위하여 다시 병행 수입이 폭넓게 허용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허용 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
 - 95년 10월 20일 재경원은 병행수입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이어서 관련 규정인 관세청 知的財產權관련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 규정과公正委 병행수입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기준을 개정 및 제정

製造, 販賣만 하는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상표권자와 동일인, 계열사, 또는 수입대리점 관계라고 볼 수 없을 때 병행수입 금지

○ 병행수입의 허용 범위

- 현재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경우: 수입은 하지 않고 제조, 판매만 하는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상표권자와 동일인, 系列社, 또는 輸入代理店 관계라고 볼 수 없을 때. 단 수입을 하더라도 국내 총 판매량의 50% 이상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, 原產地가 동일한 상품에 한해 병행수입을 허용
- (계열사관계의 기준) 국내외 상표권자가 本支社관계 또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議決權 있는 주식의 50% 이상 소유하거나 또는 最大 株主로서 상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% 이상 소유한 경우
- (眞正商品의 기준) 상품의 품질은 동일한 상표라도 각국의 기호, 기후, 제도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생산되므로 근소한 품질 차이 때문에 眞正商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병행수입의 금지 요청이 가능하게 되 병행수입의 허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됨으로 진정상품의 기준이 추가로

규정됨

- 稅關場에 신고된 상품과 市中에 공급된 상품이 동일한 상표와 품질로서 보증이 되어야 하나 명백히 품질이 다른 경우 진정상품으로 보지 아니함. 단 상품의 품질은 각국의 기호, 기후, 제도에 따라 약간 달리 생산되므로 근소한 차이는 병행수입 금지 요청 이유가 될 수 없음

수입상품과 관
련상품의 價格
安定 및 多樣
化, 유통기업의
경쟁력 提高를
기대. 병행수입
허용은 世界化
및 市場開放 추
세에 맞추어 상
표권 보호와 경
쟁촉진의 원칙
이 잘 調和된
정책

○ 「並行輸入 許容」의 評價

- 상표권 보호하에서 소비자가 누리는 여러가지 서비스 이익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과도한 수입품 판매 마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문제이며 경쟁촉진에서 오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
- 수입 상품과 관련 상품의 가격 안정 및 다양화, 유통업계의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됨
- 전반적으로 세계화와 시장 개방 추세에 부합하며 상표권 보호의 정도와 경쟁 촉진의 원칙이 細部的으로 잘 조화된 정책임

○ 政策 課題

- 기존 수입대리점의 영업권 형성분과 영업 이익을 위하여 병행수입 허용의 猶豫期間 설정이 필요함
- 國內衣類業體의 국제적 디자인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
- 「資本的 紐帶」에 대한 定義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해질 수 있으며 개별적 事例에 대한 柔軟한 司法的 評價 능력이 요청됨

(이 세 채)